

선	기관의 장
람	

시 보

제15호 2023. 4. 12.(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3-12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광양시 고시 제2023-12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2
광양시 고시 제2023-1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3
광양시 고시 제2023-127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4
광양시 고시 제2023-130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6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3-822호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광양시 공고 제2023-825호	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8
광양시 공고 제2023-827호	2023년 1/4분기 광양시 임대조건 공고	50

회										
람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 797-2323, 행정271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4. 12.

광 양 시 장

1. 제한지역(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일부해제	광양시 도이동 일원	804,278	감) 486,505	317,773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규모 축소

2. 제한사유 :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도시개발 예정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3.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 보상을 목적으로 한 하우스 및 수목 식재 등)

4. 제한기간 : 2019. 09. 05. ~ 2024. 09. 04.(5년)

5. 기타사항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제한지역 고시 전에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고시된 면적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도면을 우선 적용합니다.

6. 관계도서(도면) : 게재생략(광양시청 택지과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택지과(☎061-797-28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2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중마청룡길 8-4
	성명	한국예총광양지회
점용지역	위치	광양읍 칠성리 631 외 1필지
	면적	66㎡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2023 광양종합예술제 공연
점용기간		2023. 4. 7. ~ 2023. 4. 9.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2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117
	성명	광양장애인복지관
점용지역	위치	광양읍 칠성리 881-2필지
	면적	500㎡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전시회
점용기간		2023. 4. 10.(1일)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12.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백운2로 525-9 외 7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4.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 물 번 호 부 여 8 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422-1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백운2로 525-9	20230412	20090623	광양시 명산인 백운산에서 인용, 일련번호 부여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145-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동주2길 30-16	20230412	20210707	행정리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 부여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138-5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1길 52 (마동)	20230412	20120711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옛 지명 인용, 일련번호 부여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798	전라남도 광양시 명당4길 17 (태인동)	20230412	20191111	마을지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 부여
5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1921-9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3길 19 (성황동)	20230412	20210210	옛 마을이름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 부여
6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통리 204-11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해랑2길 2	20230412	20200603	사업명 인용 및 일련번호 부여
7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87-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남문3길 13	20230412	20100331	옛 광양읍성 남문거리의 지명에서 인용, 일련번호 부여
8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1596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섬진강매화로 847번길 115-3	20230412	20211103	섬진강변과 매화재배지에서 명명 및 기초번호 부여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213-5	2023. 4. 12.	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축물 멸실 (※상세내역 불임참조)
2	이 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4. 12.

광 양 시 장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연 번	업무 구분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말소일 (건축물멸실 확인일)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건물번호 폐지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213-5	2023. 3. 1.	2023. 4. 12.	건축물대장 말소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최근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대와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에 맞추어 친환경 농업기술 중 하나인 미생물농법이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2019년 농업용미생물실 신축 이후 친환경 미생물제제 공급량이 매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필요
- 기존의 일률적으로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무상공급 조례를 개정하여 영농규모별 무상공급량을 차등화시켜 미생물제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효율적인 영농기술 보급을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용어수정

- 농업의 발전과 → **광양농업**의 발전과
-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 조례용어 정의(안 제2조) : 자주 바뀔 수 있는 사항(세부명칭) 삭제

- “○○균” → “토양미생물제제,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클로렐라”

○ 시설물 위치(안 제3조) : 광양시과학영농관 건립에 따른 위치 변경

- “광양시농업기술센터 내” → “광양시과학영농관 1층”

○ 신설(안 제9조) : 농업용미생물 공급신청에 관한 사항

- 농업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급 신청서를 제출(최초 1회만 제출)
- 공급신청서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작성하여야 함

○ 신설(안 제11조~제12조) : 미생물 무상·유상공급에 관한 사항

- 무상공급·유상공급 조문 분리 : 기존 조례 제9조(공급방법)에 무상·유상에 대한 사항이 함께 서술되어 있어 ‘**비가시적이다**’ 라는 **민원 발생으로 조문을 분리**하여 공급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가시적으로 명확히 제시

- 무상공급량 증대 : “연간 300리터 이내” → “**연간 500리터 이내**”
- 무상공급 방식 세분화 : “일률적 공급” → “농업형태 및 영농규모별 무상공급량 차등화(별표 1)” 명시
- 유상공급 가격 : “시장이 별도로 고시” → “광양시 농업용미생물 공급단가(별표 2)” 명시

구 분	농업용미생물		
	판매단위	단 가	금 액(원)
조례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면서 무상공급 한도를 초과하여 유상공급 받고자 하는 자(한도초과자)	2리터	600원/리터	1,200
	5리터		3,000
조례 제10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광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자(기타-관외자)	2리터	1,200원/리터	2,400
	5리터		6,000

○ 별지

- “농업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 → “농업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 “유상공급 신청서” → “농업용미생물 구매 신청서(별지 제2호)” 내용 변경
- “영농규모별 무상공급량(별표 1), 광양시 농업용미생물 공급단가(별표 2)” 추가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4. 7. ~ 4. 27.(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전부개정조례안: 별첨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기술보급과장, 전화: 061-797-3559, FAX: 061-797-2596, E-mail: guswnd1239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현행조례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농업인에게 농업용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미생물”이란 「비료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에서 규정하는 미생물(이하“토양미생물제제”,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클로렐라”)을 말한다.
2. “농업용미생물실”이란 농업용미생물을 연구 및 배양·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업용미생물 배양”이란 비료공정규격 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이상으로 농업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농업용미생물실은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광양시과학영농관 1층)에 둔다.

제4조(기능) 농업용미생물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용미생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미생물의 배양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농업용미생물의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농업 실천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업용미생물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용미생물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수급계획) 시장은 농업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량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배양한다.

제7조(교육) ① 농업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광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용미생물 활용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로 갈음한다.

③ 시는 정기교육 일정을 수립하여 매년 1월 광양시 공보 및 누리집에 공고한다.

제8조(공급규격) ① 농업용미생물은 2리터와 5리터 포장지에 단위포장하여 공급한다.

② 농업용미생물을 1회 100리터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급받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농업용미생물실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방법) 농업용미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도 내 무상공급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유상공급한다.

1. 광양시 농업인
2. 광양시의 농업용미생물 실증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무상공급) ① 제9조에 따른 무상공급은 “광양시 농업인”의 영농규모에 따라 연간 500리터 이내로 제한한다.

② 농업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급신청서를 1회에 한해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공급량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유상공급) ① 제9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을 유상공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공급가격은 별표 2와 같다.

③ 농업용미생물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2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공급받는 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4.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용량의 공급한계로 더 이상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3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농업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업용미생물 구매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농업용미생물 판매료 수입대장(별지 제3호 서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1. 성명(성별)	(남, 여)	2. 생년월일	
3. 주 소			
4. 연 락 처		5. 사용분야	작물용()/작목명()
			축산용()/축종명()
첨부서류			
1. 농업인경영체등록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확인사항			
신청자는 농업융미생물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받은 농업융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광양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광양시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목적 : 농업융미생물 활용 농가 관리 및 현황조사, 농업융미생물실 운영사항 안내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주택, 휴대폰)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광양시 및 국가, 지방 행정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농업융미생물 신청 및 활용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을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작성하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광양시 농업융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 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융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별표 1]

광양시 농업용미생물 무상공급량

구 분	작 목	영농규모	무상공급량 (연간)
조례 제2조제4호 에서 규정하는 “광양시 농업인”	벼	0.5ha 미만	300리터
		0.5ha 이상	500리터
	전 작	0.5ha 미만	300리터
		0.5ha 이상	500리터
	채 소	0.3ha 미만	300리터
		0.3ha 이상	500리터
	과 수	0.5ha 미만	300리터
		0.5ha 이상	500리터
	특 작	0.3ha 미만	300리터
		0.3ha 이상	500리터
	축 산	· 한우: 50두 미만 · 돼지: 500돈 미만 · 닭 : 1,000수 미만 · 이외: 100두 미만	300리터
		· 한우: 50두 이상 · 돼지: 500돈 이상 · 닭 : 1,000수 이상 · 이외: 100두 이상	500리터
광양시민(비농업인)			40리터

※ 살포기준 : 주 1회 살포, 살포 시 1×10^7 이상(최대 100배 희석)

※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한 광양시민(비농업인)의 경우 연간 40리터까지 무상공급이 가능함

농업용미생물 구매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1. 성명(성별)	(남, 여)		2. 생년월일		
3. 주 소					
4. 연 락 처			5. 사용분야	작물용(), 축산용()	
신청내역					
균	균	균	균	균	균
2리터()	2리터()	2리터()	2리터()	2리터()	2리터()
5리터()	5리터()	5리터()	5리터()	5리터()	5리터()
포	포	포	포	포	포
금 액 : 금 원					
확인사항					
· 신청자는 농업용미생물실의 운영 안내에 따라 공급받은 농업용미생물을 활용하여야 하며, <u>개인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광양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u> · 농업용미생물의 <u>부적절한 사용 및 판매, 무단반출로 발생하는 사항</u>에 대해서는 <u>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u>으로 간주합니다.					
본인은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유상공급)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별표 2]

광양시 농업용미생물 공급단가

구 분	농업용미생물	
	판매단위	금 액(원)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면서 무상공급 한도를 초과하여 유상공급 받고자 하는 자 (한도초과자)	2리터	1,200
	5리터	3,000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 (기타-관외자)	2리터	2,400
	5리터	6,000

[별지 제3호 서식]

광양시 농업용미생물 판매료 수입대장

연 번	공 급 일	균 종	신 청 인		공 급 량 (리터)	금 액 (원)	비 고
			주 소	성 명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11. 11.]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774호, 2020. 11. 11., 전부개정]

전라남도 광양시(기술보급과), 061-797-356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비절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농업인에게 농업용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미생물”이란 「비료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에서 규정하는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비티균, 백강균, 클로렐라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농업용미생물실”이란 농업용미생물을 연구 및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업용미생물 생산”이란 비료공정규격 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이상으로 농업용미생물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광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은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광양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농업용미생물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용미생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농업용미생물의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농업 실천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업용미생물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용미생물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수급계획) 시장은 농업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량을 파악하여 연중계획을 수립하고 생산한다.

제7조(교육) ① 농업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농업용미생물 활용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신청은 제9조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무상·유상공급 신청서 제출로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정기교육 일정을 수립하여 매년 1월 광양시 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8조(공급규격 등) ① 농업용미생물은 2리터 또는 5리터 포장지에 단위포장하여 공급한다.

② 농업용미생물을 1회 100리터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급가능 여부를 공급받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농업용미생물실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업용미생물의 무상공급은 개인별(농업법인 등 단체 포함)로 연간 300리터 이내로 한정한다.

제9조(공급방법) ① 농업용미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8조제3항에 따른 한도 내

에서 무상공급한다. 이 경우, 농업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양시 농업인
 2. 광양시에 소재하는 농업법인 또는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
 3. 광양시의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및 실증시험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8조제3항에 따른 무상공급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유상공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유상공급 대상자는 농업용미생물 유상공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공급가격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 ⑤ 농업용미생물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0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공급받는 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4.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설비용량에 따른 공급한계로 더 이상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
5. 제9조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농업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농업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농업용미생물 판매료 수입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74호, 전부개정 202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비절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u> <u>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농업인에게 농업용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광양농업의</u> ----- <u>경영비 절감</u> ----- ----- ----- <u>농업용미생물실</u> ----- ----- ----- <u>사항에 대하여</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u>농업용미생물</u> ”이란 「 <u>비료관리법</u> 」, 「 <u>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 」 및 「 <u>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u> 」, 「 <u>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u> 」에서 규정하는 <u>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비티균, 백강균, 클로렐라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u>		1. “ <u>농업용미생물</u> ”이란 「 <u>비료관리법</u> 」, 「 <u>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 」 및 「 <u>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u> 」, 「 <u>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u> 」에서 규정하는 <u>미생물(이하 “토양미생물제제”,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클로렐라”)을 말한다.</u>		
2. “ <u>농업용미생물실</u> ”이란 <u>농업용미생물을 연구 및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u>		2. ----- ----- <u>배양·공급하는</u> -----.		

3. “농업용미생물 <u>생산</u>”이란 비료공정규격 또는 유기농업 자재 공시 기준 이상으로 농 업용미생물을 <u>생산하는</u> 것을 말한다. 4.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u>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광양시에 거주하는</u>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u>광양시 농업용미생 물실</u>은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u>광양시농업기술센터 내</u>)에 둔다. 제4조(기능) 농업용미생물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 략) 2. 농업용미생물의 <u>생산</u> 및 공 급에 관한 사항 3.·4. (생 략) 제6조(생산수급계획) 시장은 농 업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량을 <u>파악하여 연중계획을 수립하고 생산한</u> <u>다.</u> 제7조(교육) ① 농업용미생물을	3.----- <u>배양</u>----- ----- ----- <u>배양하는</u> -----. 4.----- ----- ----- ----- <u>주소를 둔</u> ----- ----- -. 제3조(위치) <u>농업용미생물실</u>---- ----- <u>(광양시과학영농관 1층)</u>----- -. 제4조(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 <u>배양</u> ----- ----- 3.·4. (현행과 같음) 제6조(생산수급계획) ----- ----- ----- <u>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연중계획을 수립하 여 배양한다.</u> 제7조(교육) ① -----
--	--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농업용미생물 활용교
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신청은 제9조에 따른 농
업용미생물 무상·유상공급 신
청서 제출로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정기교육 일정을 수
립하여 매년 1월 광양시 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다.

제8조(공급규격 등) ① 농업용미
생물은 2리터 또는 5리터 포장
지에 단위포장하여 공급한다.

② 농업용미생물을 1회 100리터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
급가능 여부를 공급받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농업
용미생물실에 협의하여야 한
다.

③ 농업용미생물의 무상공급은
개인별(농업법인 등 단체 포함)
로 연간 300리터 이내로 한정하
다.

제9조(공급방법) ① 농업용미생
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8조제3항에
따른 한도 내에서 무상공급한

----- 사람은 광양시농
업기술센터에서 -----

-----.

② 교육 신청은 별지 제1호 서
식----- 공급 -----
-----.

③ 시는 -----
----- 공보 및 누
리집-----.

제8조(공급규격) ① -----
--- 2리터와 -----
-----.

② -----
----- 사람은 -----

-----.

<삭 제>

제9조(공급방법) 농업용미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한도 내 무상공
급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 이 경우, 농업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양시 농업인

2. 광양시에 소재하는 농업법인 또는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

3. 광양시의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및 실증시험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8조제3항에 따른 무상공급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유상공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유상공급 대상자는 농업용미생물 유상공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공급가격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유상공급한다.

1. 광양시 농업인

2. 광양시의 농업용미생물 실증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농업용미생물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신 설>

<신 설>

제10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

제10조(무상공급) ① 제9조에 따른 무상공급은 “광양시 농업인”의 영농규모에 따라 연간 500리터 이내로 제한한다.

② 농업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급신청서를 1회에 한해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공급량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유상공급) ① 제9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을 유상공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구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공급가격은 별표 2와 같다.

③ 농업용미생물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2조(공급의 제한) -----

-----.

다. 1. ~ 3. (생 략) 4.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 력, 설비용량에 따른 공급한 계로 더 이상의 공급이 어려 운 경우 5. 제9조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 지 않은 경우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기록·보존하 여야 한다. 1. 농업용미생물 생산대장(별 지 제3호서식) 2. 농업용미생물 공급대장(별 지 제4호서식) 3. 농업용미생물 판매료 수입대 장(별지 제5호서식)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 <u>설비</u> <u>용량의</u> ----- ----- 5. 제11조----- ----- 제13조(대장비치) ----- ----- --. 1. 농업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농업용미생물 구매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농업용미생물 판매료 수입대 장(별지 제3호 서식) <삭 제>
--	---

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 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기존 종합검정실의 위치 변경, 분석항목 다양화에 따른 업무 추진사항 변경 등으로 기존 조례개정 필요
- 종합검정실 업무 추진사항(분석의뢰 방법·처리절차, 분석수수료 등) 법·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3. 주요내용

○ 조례의 명칭: 명칭변경

-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 **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법적 운영근거 명시

- 「농촌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조례의 정의(안 제2조): 세부용어 정의 추가

- 기존 “분석” 용어 정의에 “**종합검정실**”, “**광양시 농업인**” 용어 정의 추가

○ 신설(안 제3조~제4조): 위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위치: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광양시과학영농관 2층)
- 운영 및 관리: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배치, 장비 정비 및 보완 필요

○ 분석수수료(안 제6조): 명확한 근거 제시

-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제12조제4항

○ 신설(안 제8조): 분석기간

- 분석의뢰서 접수 후 14일 이내 분석업무 처리

○ 분석결과 통지(안 제10조): 결과통지 방법 추가 및 세분화

- 토양 분석결과 통지만 명시 → 농업용수, 가축분뇨 퇴·액비 통지 추가

○ 신설(안 제13조): 대장비치

-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통지서 사본 1년간 보존

○ 별표, 별지(별표 1~3, 별지 제1호)

- 종합검정실 분석항목 변경(별표 1): 기존 6항목 → 변경 4항목
 - 농작물 식물체 분석 제외(직불제, 이행점검 분석항목 변경), 객토원 분석 제외
- 종합검정실 처리절차 신설(별표 2): 업무 체계화 및 구체화
- 기존 자체 분석수수료 삭제(별표 3): 개정안 제6조제2항에 명시
-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 토양·농업용수 분석의뢰서,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의뢰서로 세분화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4. 7. ~ 4. 27.(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전부개정조례안: 별첨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기술보급과장, 전화: 061-797-3560, FAX: 061-797-2596, E-mail: pon0310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현행조례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농촌진흥청에서 정하는 「표준분석법」을 통해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종합검정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적·정량적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분석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종합검정실은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광양시과학영농관 2층)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분석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

으로 장비를 정비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검정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지침서를 만들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료를 채취한 후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분석수수료) ① 제5조에 따른 분석 의뢰자는 분석의뢰와 동시에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른다.

③ 분석 수수료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7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광양시 농업인
2. 광양시에 소재하는 농업법인 또는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
3. 광양시 산하 공공기관
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분석기간) ① 시장은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후 별표 2에 따라 14일 이내 분석을 완료한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많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14일 이내 분석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분석을 의뢰한 자와 협의하여 분석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분석거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시료가 오염, 변질 등으로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제8조제2항의 분석기간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수수료를 이미 납부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분석결과 통지) ① 시장은 분석 완료 후 3일 이내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석결과 통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한다.

1. 토양: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2. 가축분뇨 퇴·액비: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성분검사 결과서 발급

3. 농업용수: 별지 제3호 서식 발급

제11조(분석결과와 광고 등 금지) 제10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분석결과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2. 분석결과 통지서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

3.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제12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시장은 제11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비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제10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 사본을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합검정실 분석항목

분 석 항 목 명		분 석 성 분
토양		pH(산도), EC(전기전도도), 유효인산, 유효규산, 치환성양이온(칼슘, 칼륨, 마그네슘), 석회소요량, 유기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액비	부숙도,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질소, 인산, 칼륨
농업용수		pH(산도), EC(전기전도도), 염분농도(%)

[별표 2]

분석업무 처리절차

의 의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한
	종합검정실	
의뢰서, 내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분석대상 시료 접수	접수 : 수시 수수료납부 : 의뢰시
	분석실시	분석 실제 소요시간 (최소 14일) [특정 기간 시료 집중 시 분석 소요시간 증가]
	분석결과서 작성	
성 적 서 교 부	분석결과서 통지	분석완료 즉시

[별지 제1호 서식]

토양·농업용수 분석의뢰서			
성 명 (작목반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시료구분	토양 ☐ 친환경인증 (무/유) ☐ 농산물우수관리(GAP) ☐ 농가의뢰(일반)	농업용수 ☐ pH(산도) ☐ EC(전기전도도) ☐ 염분농도(%)	
시료 접수	총 (점)		
발급통보 유 형 (선택)	☐ 친환경 인증기관 발송 : (기관명) ☐ 메일 : ☐ 상담소 : ☐ 방문 : ☐ 문자 :		
『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분석의 의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의뢰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수 수 료	
- 토양 화학성분 분석 시: 별지 제1-1호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토양 분석 시료내역서

일련 번호	성 명	농지주소				지 적(m ²)	재배작물	인증유형 (친환경 인증 시 표시)
		읍,면,동	리	지번	산			
(예시) 1	홍길동	다압면	고사리	123-4	✓	1,234 (m ²)	밤	✓ 무농약 ☐ 유기농
					☐			☐ 무농약 ☐ 유기농
					☐			☐ 무농약 ☐ 유기농
					☐			☐ 무농약 ☐ 유기농
					☐			☐ 무농약 ☐ 유기농
					☐			☐ 무농약 ☐ 유기농
					☐			☐ 무농약 ☐ 유기농
					☐			☐ 무농약 ☐ 유기농
					☐			☐ 무농약 ☐ 유기농

[별지 제2호 서식]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의뢰서		일련번호 (예시) 1
의 뢰 자	상호명	
	성명(대표자)	
	축사주소	주소 :
	연락처	휴대전화 :
	면적(m ²)	축사 : / 퇴비사 :
	배출시설유형	☐ 신고 ☐ 허가 ☐ 기타()
의 뢰 내 용	시료종류	☐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 기타
	축종	☐ 돼지 ☐ 소·젖소 ☐ 닭·오리 등 ☐ 기타()
	검사 요청 사항	☐ 부숙도 ☐ 함수율 ☐ 질소, 인산, 칼륨 ☐ 구리 ☐ 아연 ☐ 염분
	발급통보 유형(선택)	☐ 메일 ☐ 상담소 ☐ 방문 ☐ 문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및 『광양시 종합검정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분석의 의뢰)에 의거 위와 같이 분석의뢰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 의뢰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 수 료

[별지 제3호 서식]

분석결과 통지서				
신청인	성명 (법인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법인소재지)		의뢰일자	
분석결과	의뢰시료명			
	분석방법			
	분석항목	기준치	분석결과	
사용목적				
기 타				
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장 귀하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2.03]

(일부개정) 2016.02.03 조례 제1406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술보급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797-356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의뢰되는 토양, 식물체, 농업용수, 퇴비, 가축액비, 중금속 등을 정밀분석 처방하고 과학영농실천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경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2. 3.>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많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정해진 날짜까지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한 자와 협의하여 분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건수가 30건 이상일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제목개정 2016. 2. 3.]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제3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설 2016. 2. 3.>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경비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석결과 통지서를 별표 2의 기간내에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경우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분석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가 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논·밭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 2. 3.>

1. 각종 사업의 첨부 자료, 친환경인증, 토양개량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2. 분석결과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
3.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각 호 전부개정 2016. 2. 3.>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제9조(분석의 경비) ① 제3조에 따른 분석 의뢰자는 분석대상 시료와 동시에 분석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목별 분석경비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 징수절차는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가 광양시에 있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개정 2016. 2.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11. 26.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2. 3.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u>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광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의뢰되는 토양, 식물체, 농업용수, 퇴비, 가축액비, 중금속 등을 정밀분석 처방하고 과학영농실천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경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 “이란 <u>광양시 농업기술센터(이하 ” 센터” 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u>	<u>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광양농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u>별표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농촌진흥청에서 정하는 「표준분석법」을 통해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u> 2. “종합검정실”이란 <u>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적·정량적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u>

<신 설>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많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정해진 날짜까지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광양시 농

로 분석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종합검정실은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광양시 과학영농관 2층)에 둔다.

제5조(분석의뢰) -----

-----사람은 시료를 채취한 후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한 자와 협의하여 분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건수가 30건 이상일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분석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장비를 정비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검정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지침서를 만들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기간) ① 시장은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후 별표 2에 따라 14일 이내 분석을 완료한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많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14일 이내 분석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분석을 의뢰한 자와 협의하여 분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신 설>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제3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경비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석결과 통지서

제9조(분석거부) ① 시장은-----

-----.

1. 분석대상 시료가 오염, 변질 등으로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삭 제>

3. 제6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광양시-----

<삭 제>

4. 제8조제2항의 분석기간 조정

② -----

----- 분석 수수료를 이미 ----- 반환-----.

제10조(분석결과 통지) ① 시장은 분석 완료 후 3일 이내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를 별표 2의 기간내에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경우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분석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가 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논·밭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각종 사업의 첨부 자료, 친환경인증, 토양개량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2. 분석결과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
3.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각 호 전부개정 2016. 2. 3.>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② 제1항의 분석결과 통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한다.

1. 토양 :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2. 가축분뇨 퇴·액비 :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성분검사 결과서 발급
3. 농업용수 : 별지 제3호 서식 발급

제11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10조-----
-----사람은-----
-----.

1. 분석결과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래 -----
2. 분석결과 통지서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
3. -----
-----경우

제12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

소장은 제7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의 경비) ① 제3조에 따른 분석 의뢰자는 분석대상 시료와 동시에 분석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목별 분석경비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 징수절차는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가 광양시에 있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신 설>

소) 시장은 제11조 -----
---사람-----

--.

제6조(분석 수수료) ① 제5조에 따른 분석 의뢰자는 분석의뢰와 동시에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다.

③ 분석 수수료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7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광양시 농업인
2. 광양시에 소재하는 농업법인 또는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
3. 광양시 산하 공공기관
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대장비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제10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 사본을 1

년간 보존해야 한다.

2023년 1/4분기 광양시 임대조건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 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조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광 양 시 장



1. 공고내용 : 2023년 1/4분기 광양시 임대조건 신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3. 4. 7.~ 2023. 12. 31.
3. 공고장소 : 우리시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조건(붙임 참조). 끝.